

**미국장로교회**

**어린이/청소년/취약한 성인**

**보호 정책 및 그 절차**

**PRESBYTERIAN CHURCH (U.S.A.)  
CHILD/YOUTH/VULNERABLE  
ADULT PROTECTION POLICY  
AND ITS PROCEDURES**



**제 222 차 총회(2016) 승인**

**미국장로교회 어린이 / 청소년 / 취약한 성인**

**보호 정책 및 그 절차**

**PRESBYTERIAN CHURCH (U.S.A.) CHILD/YOUTH/VULNERABLE  
ADULT PROTECTION POLICY AND ITS PROCEDURES**

Copyright © 2016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U.S.A.)

이 간행물의 어떤 부분도 사전 서면없이 전자적, 기계적, 복사, 녹음 또는 기타 (잡지 또는 신문 리뷰에서 사용된 간략한 인용문)으로 복제하거나 검색 시스템에 저장할 수 없으며, 게시자의 허가없이 어떤 형태나 수단으로도 전송할 수 없다.

미국장로교의 당회, 노회 및 대회는 발행인의 사전 서면 허가없이 본 공보의 각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 차례 CONTENTS

정책 성명서 POLICY APPLICATION STATEMENT.....	1
정책의 이론적 근거 POLICY RATIONALE .....	1
정의 DEFINITIONS.....	2
검사, 훈련 및 배경 점검 SCREENING, TRAINING, AND BACKGROUND CHECKS ...	3
기록의 기밀 유지 CONFIDENTIALITY OF RECORDS .....	5
보고서 REPORTING .....	5
어린이 안전 응급 팀 SAFE CHILD RESPONSE TEAM .....	6
어린이 및 청소년과 일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사 규정 MANDATORY EVENT RULES FOR WORKING WITH CHILDREN AND YOUTH .....	7
<i>소셜 미디어—전자통신 Social Media—Electronic Communications.....</i>	9
<i>소셜 미디어 통신 Social Media Communications .....</i>	9
<i>소셜 네트워킹 행동 강령 Social Networking Code of Conduct .....</i>	10
봉사를 위한 정책 및 신청서명 SIGNING OF POLICY AND APPLICATION TO SERVE .....	10



# 미국장로교회 어린이 / 청소년 / 취약한 성인

## 보호 정책 및 그 절차

### 정책 성명서 POLICY APPLICATION STATEMENT

미국장로교 총회와 총회의 모든 기구는 모든 교회 회원, 교회 임원, 비회원 직원 및/또는 계약자, 그리고 교회의 회중, 공의회 및 단체의 자원 봉사자들이 어린이, 청소년 및 취약한 성인과의 모든 상호 작용을 포함하여 성실, 안전, 육성 및 보살핌에 대한 가장 강한 인식을 유지합니다. 이 정책은 아동, 청소년 및 취약한 성인과 관련된 모든 총회기구가 후원하는 활동에 적용됩니다.

### 정책의 이론적 근거 POLICY RATIONALE

아동/청소년/취약 계층 보호 정책의 구현 및 문서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대 및 방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 어린이, 청소년 및 취약한 성인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교회는 그들의 안전과 육성을 제공하는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두 팔을 반영하는 장소로 부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9 장 14 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모든 수준의 공의회와 모든 기관에서 그리스도의 품 안을 반영하는 안전과 양육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 어린이, 청소년 또는 취약한 성인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학대는 희생자/생존자의 삶에 영속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와 개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치유와 소망의 생명 부여 주체가 되는 교회의 부름입니다.
- 더 큰 교회는 학대와 태만이 발생했을 때 희생자/생존자와 그 가족과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교회는 학대를 수반하는 상처, 고통, 불신으로 인해 불구가 됩니다. 교회는 모든 수준에서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정적 손실과 정직성의 상실을 겪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내의 아동, 청소년 또는 취약한 성인 학대의 경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슬프게도 불구로 만드는 헤아릴 수 없는 영적, 심리적, 정서적 및 육체적 해를 가져옵니다.
- *규례서*에 따르면 "보편적 교회를 대신하여 회중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세례 받은 사람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고" 장로교인들은 이 세례 서약을 진지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린이, 청년, 취약한 성인을 포함한 교회 보살핌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도록 이해합니다 (*규례서* W-2.3013).
- 어린이와 청소년은 교회의 보살핌과 봉사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공동 수령자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0 장 15-16 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것을 예증 하셨습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아이들을 팔에 안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팔에 안고 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현존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번창하며 육성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정의 DEFINITIONS

각 주마다 어린이/청소년/취약한 성인 학대로 정의된 것과 관련하여 자체 법규가 있습니다. 이 정책은 모든 스폰서 공의회와 미국장로교회의 단체가 각 행사/활동의 위치와 관련된 주 법령을 숙고하고 숙지하도록 권고합니다.

다음은 이 특정 정책에서 용어 정의 및 의도된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상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어린이 Child:** 어린이는 0-11 세 사이의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청소년 Youth:** 청소년은 12-17 세 사이의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미성년 Minor:** 미성년자는 0-17 세 사이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입니다.

**어린이/청소년 근로자 Child/Youth Worker:** 자원 봉사자 또는 유급 직원 또는 계약자로서, 총회가 후원하는 행사나 어린이 및/또는 청소년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취약한 성인 Vulnerable Adult:** 동의 할 수 있는 발달 또는 인지력이 없는 18 세 이상인 자.

**취약한 성인 학대 Vulnerable Adult Abuse:** 취약한 성인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정서적 부당함, 태만 또는 착취를 초래하는 행위 또는 행동 불이행.

**어린이/청소년 학대 Child/Youth Abuse:**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정서적 학대, 태만 또는 착취를 초래하는 행위 또는 행동 불이행.

**성적 학대 Sexual Abuse:** *규례서*에서 성적인 학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적 학대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 관련된 성적행위를 포함하는 범법이다. (1) 19 세 이하나 동의할 정신적 능력이 없는 18 세 이상의 사람; 또는 (2) 그 사람과의 행위가 강제, 위협, 강요, 협박, 또는 직제사역이나 직위의 남용을 포함할 때” (*규례서*, D-10.0401c).

**기술의 오용 Misuse of technology:** 아동/청소년의 괴롭힘 또는 학대를 초래하는 기술 사용. 여기에는 기술을 사용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암시적인 메시지와 이미지를 보내는 것이 포함됩니다. 성인은 서명된 권리 포기서 아동/청소년의 법적 후견인이 사전 승인하지 않았거나 교회 웹 사이트나 기타 소셜 미디어 프로그램과 같은 공개 매체에 접촉하지 않은 아동이나 청소년과 기술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교 선교국 PMA:** Presbyterian Mission Agency.

**장로교 사무국 OGA:** Office of General Assembly.

**안전한 어린이 대응 팀 Safe Child Response Team:** 안전한 아동 대응 팀은 총회 단체가 후원하는 활동의 아동, 청소년, 또는 취약한 성인 학대에 대한 혐의 및 보고에 응답하도록 특별히 훈련된 총회의 후원 공의회나 기관의 최소 3 명으로 구성되거나 임명된 팀입니다. 이 팀은 모든 총회 후원 행사에서 연락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폰서 공의회 또는 법인 Sponsoring Council or Entity:** 어린이, 청소년 또는 취약한 성인을 위한 사건 및 활동 계획을 담당하는 미국장로교 내의 총회 공의회 또는 실체.

## 검사, 훈련 및 배경 점검 SCREENING, TRAINING, AND BACKGROUND CHECKS

유급 직원, 계약자 또는 자원 봉사자에 상관없이 어린이/청소년 근로자는 다음의 대상이 됩니다:

1. 조직 공의회는 완성되고 서명되고 승인된 신청서 및 배경 확인 승인 양식을 수령하고, 행사 정책을 읽었음을 확인한 서명을 보관합니다. 신청서에는 최소 2 명의 참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모든 어린이/청소년 근로자는 최소 18 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장 나이가 많은 청소년보다 4 년 이상 나이가 많아야 합니다.

3. 범죄자 신원 조회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 후원 협의회 나 단체는 특정 사건에 적절한 배경 조사를 결정할 수 있는 보험 회사를 통해 보험 회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스폰서 협의회 또는 단체는 모든 아동/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배경 조사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이 수표는 조사 시점의 6 개월 안에 실시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제한은 조직공의회 보험 회사의 요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벤트에 매년 참여하는 어린이/청소년 근로자는 보험 회사 기준에 따라 1 년에 한 번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야 합니다.)

4. 유급, 계약 또는 자원 봉사를 하는 모든 어린이/청소년 근로자는 행사가 시작되기 1 년 이내에 언젠가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은 스폰서 공의회나 단체가 제공해야 하며 학대 예방 방법 및 상세한 보고 계획 뿐 아니라 행사에서의 어린이/청소년 보호 정책을 철저히 다루어야 합니다. 후원 협의회 또는 단체는 이러한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계약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다음을 추가로 다루어야 합니다:

- 어린이/청소년/취약한 성인 남용 및 방임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학대와 방치의 징후와 증상을 어떻게 인식 합니까?
- 학대 및 보고의 정의에 관한 주 정부 법.
- 필수 범죄 배경 점검 및 해당 파일의 보안.
- 신청 및 심사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
- 특히 성인 / 아동 / 청소년 비율, 교통 및 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과의 적절한 경계.
- 야간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수면 준비와 화장실 / 샤워 시설 사용과 관련된 경계에 대한 논의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 각 행사마다 안전한 어린이 반응 팀 (Safe Child Response Team)이 있으며, 이들에게 연락하는 방법.
- 총회 후원 행사에서 아동이나 청소년과 직접 일하는 모든 유급 직원은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 기타 관련 주제.

5. 어떤 사람도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특정 중죄 또는 경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을 갖고 아동 / 청소년 근로자로 봉사 할 수 없습니다:

- 형사 살인;
- 가중 된 폭행;

- 마약 또는 규제 물질의 소지, 사용 또는 판매와 관련된 범죄;
- 성적 학대;
- 성폭력;
- 청소년에 대한 상해;
- 근친상간;
- 청소년과의 불경;
- 청소년의 성행위 또는 성행위 유도;
- 아동 포르노의 소지 또는 홍보;
- 미성년자에게 유해 물질의 판매, 배포 또는 전시;
- 청소년에게 해로운 고용;
- 청소년의 포기 또는 위험;
- 납치 또는 불법적인 구속;
- 공중의 음란물이나 음란한 노출; 청소년의 유혹;
- 성적 비행이나 성적 학대를 포함한 범죄, 특히 미성년자와의 비행이나 학대가 있는 경우;
- 알몸이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성적 또는 부적절한 포즈 (아동 포르노)가 있는 미성년자의 사진을 수집하거나 배포하는 등 성적인 목적으로 기술을 오용하는 행위가 포함 된 범죄;
- 폭력이나 위험과 같은 무력 사용과 관련된 모든 범죄;
- 납치와 관련된 모든 범죄;
-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등의 음주 행위와 같은 모든 범죄.

또한 협의회나 총회 주재기구가 아동 또는 청소년 근로자가 앞서 언급한 범죄 또는 관련 범죄 중 하나에 대해 사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있는 경우 아동 / 청소년 근로자는 모든 용량에 자동으로 아동 / 청소년 사건에 참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6. 언제든지 총회기구가 미성년자를 위한 행사를 주선 할 때마다 다른 교회 공의회의 미성년자를 담당하는 어린이 / 청소년 사역자를 선출하는 공의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a. 공의회의 규정이나 성희롱이나 어린이 / 청소년 보호에 관한 지역 교회 또는 노회의 방침을 위반한 것으로 알고있는 아동 / 청소년 근로자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내지 마십시오.
- b. 전체행사에서 활동할 계획이 있는 자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 청소년 근로자로 활동하도록 보내지 않습니다.
- c. 미성년자가 포함된 총회 기관 행사를 조직하는 것을 돕는 교회 전체의 모든 공의회에 요구하거나, 혹은 임명된 어린이 / 청소년 사역자에게 이 정책에 위임된 것과 동일한 검열, 훈련 및 배경 점검 기준을 지키도록 합니다.



7. 총회 주체의 행사에서 어린이 / 청소년 근로자를 감독하는 공의회가 미성년자를 초청하고 미성년자를 위한 행사를 조직 할 때마다 총회 주체는:

- a. 어린이 / 청소년 근로자 및 자격 요건 확보를 위한 우수 사례에 관해 아동 / 청소년 근로자를 파견하는 공의회에 지침을 제공합니다.
- b. 공의회가 잠재적인 어린이 /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배경 조사를 수행하고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에 관해 어린이 / 청소년 근로자를 파견하는 공의회에 지침을 제공하고 어린이 / 청소년 근로자의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배경 조사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c. 배경 조사를 수행 할 시기와 배경 조사 제공자와 함께 공의회에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d. 총회 기관 / 행사 조직위원회의 의원을 공의회 배경 조사 수령자로 지정하고 그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 i. 받은 모든 배경 조사를 검토하십시오.
  - ii. 어린이 / 청소년 근로자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배경 조사에 대한 형사 판결을 확인합니다.
  - iii. 공의회가 잘못하여 어린이 / 청소년 근로자를 선택하는 배경 조사에서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직원이 판단한 경우 공의회에 알립니다.
  - iv. 행사를 위한 총회 기관 스폰서에게 배경 조사의 잠재적인 실격과 관련된 우려 사항을 보고하여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공의회에 알리십시오. 배경 조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동 / 청소년 근로자로서 행사에 참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 기록의 기밀 유지 CONFIDENTIALITY OF RECORDS

후원 공의회 또는 단체는 모든 아동 / 청소년 근로자 신청서, 배경 조사 결과 및 관련 정보를 기밀의 보안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

## 보고서 REPORTING

후원하는 각 총회 기관은 금지된 행동을 신고하기 위한 절차를 홍보하고 이벤트의 공공 장소에서 항상 절차의 사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 학대의 위반에 대해 의심 또는 알고있는 사람은 그러한 위반을 총회 후원 단체 행사의 지도자에게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가벼운 학대에 대해 의심되거나 이러한 일을 알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총회 후원 행사의 성인 지도자와 지식을 공유하도록 초청됩니다. 어린이 / 청소년 학대에 대한 지식이나 의심이 있는 사람은 주법이 그러한 학대를 당국에 즉각 보고하도록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인 지도자는 그러한 위반 사실을 총회 정서기 또는 부서기 또는 총회 보조 서기 또는 그 사건의 후원 총회 주체가 지정한 다른 지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단락에 따라 정보를 받는 사람은 즉시 해당 정보를 지정된 대응 팀과 공유해야 합니다.

## 어린이 안전 응급 팀 SAFE CHILD RESPONSE TEAM

공의회 혹은 총회 기관이나 법인이 계획한 미성년자를 위한 모든 행사나 활동에서 안전한 아동 대응 팀은 후원 공의회나 단체에 의해 훈련 받아야 하며, 행사 기간 전체에 걸쳐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팀은 최소한 3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직원 또는 후원 공의회 또는 단체 직원이 임명해야 합니다. 총회 주체가 선임하고 확보한 변호사는 모든 사건에 대한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응답 팀은 이 정책의 조항들 뿐만 아니라 스폰서의 단체 및 이벤트와 함께 목사, 사역장로, 직원 또는 자원 봉사자 등 리더십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아동 / 청소년 학대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장로교회의 규례서의 권징조례 절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전한 아동 대응팀은 이벤트 참가자에게 발생하는 아동 / 청소년 또는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또는 방치에 대한 대응으로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1. 관련된 희생자의 안전을 즉시 제공하십시오.
2. 보고서가 미성년자의 학대 또는 괴롭힘을 주장하는 경우, 대응 팀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a. 혐의가 주법에 따라 시민 당국에 보고되는지 즉시 확인하십시오.
  - b.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 c. 혐의 사실을 보험 회사에 통보하고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야 합니다.
3.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아동이나 청소년과의 접촉에서 고발된 개인의 일시적인 격리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고, 혐의가 해결 될 때까지 사건으로부터 피고인을 격리해야 합니다.
4. 각 사건의 기간 동안 소집된 변호사를 포함하여, 학대 / 방치 혐의에 관한 보고서를 즉시 총회 기관의 지정된 사람들에게 알리고, 각 스폰서 이벤트 기간 동안 혐의가 있는 경우 총회 주선 기관이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미디어 요청은 지정된 사람이나 사무실에서 대기중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며 관련자의 개인 정보와 기밀을 보호합니다.
5. 각 사건 이전에 학대 혐의자에게 제공되는 자원에 대해 OGA 및 PMA 에 문의하고 모든 사건에 해당 자원을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학대의 폐허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또는 정서적 필요와 외상을 돕는 즉각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6. 보고서가 교역 장로(목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면, 응답 팀은 교역 장로가 소속 된 노회 서기에게 서면 진술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서면 진술서는 미국장로교 헌법 제 2 부 규례서의 권징조례에 따라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7. 보고서가 사역장로를 상대로 하는 경우, 대응 팀은 미국장로교 헌법 제 2 부 규례서 규칙에 의거하여 조사위원회 구성을 시작하는 장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접수 되었음을 회원 당회에 통고 할 것입니다.
8. 보고서가 미국장로교회의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경우, 대응 팀은 직원, 인사 및 법률 서비스 감독 책임자 또는 위원회에 이를 통보합니다. 대응팀은 후속 조사 또는 징계 결과에 대한 감독 기관의 후속 보고서를 요청합니다.

9. 보고서가 미국장로교 이외의 후원 공의회 또는 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제기된 경우, 대응 팀은 직원의 감독을 책임지는 사람 또는 위원회에 통보할 것입니다. 대응 팀은 후속 조사 또는 징계 결과에 대한 감독 기관의 후속 보고서를 요청합니다.
10. 보고가 미국장로교회의 자원봉사자 또는 비회원을 상대로 하는 경우, 대응 팀은 총회 주체가 3인의 조사위원회를 임명하여 사건의 조사를 시작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 a. 안전 반응 팀 (Safety Response Team) 의 정보 및 학대 당사자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로부터 남용에 관한 진술을 수집합니다.
  - b. 학대 혐의로 기소 된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 c. 서면 결정을 내리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예방 및 대응 권고안을 작성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된 주요 당사자 (피고인, 가능한 희생자, 피고인, 가족) 에 대한 목회 상담을 제공하십시오.
12. 그러한 경우의 모든 절차에 대한 서면 요약은 총회기구에 의해 유지될 것입니다.
13. 학대에 대한 보고서를 가져 오거나 조사를 돕는 사람은 고용, 교회 교인 또는 소속의 조건, 또는 차별 또는 퇴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어린이 및 청소년과 일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사 규정

총회의 후원 공의회 또는 실체는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각 사건 또는 활동에 대해 취해진 다음의 조치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1. 두 명의 성인 규정: 두 명의 비 관련 성인이 항상 어린이 및 청소년 그룹에 출석해야 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비상 사태로 즉시 이를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아동 및 청소년 근로자와 자원 봉사자는 그들이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연령 그룹보다 최소 4년 이상 나이가 많아야 합니다.
2. 비율: 모든 어린이 관련 행사/활동에 대한 성인 대 어린이 비율은 2:10입니다. 모든 청소년 관련 행사/활동에 대한 성인 대 청소년 비율은 2:17입니다. 한 그룹에 각 성별의 미성년자가 한 명 이상 있을 때 각 성별의 성인도 한 명씩 있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만 비율과 성별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3. 창문 및 문 열림 보기: 미성년자 및 성인 근로자 또는 자원 봉사자가 방에 있을 때 문을 닫으면 문에 보기 창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4. 성인 근로자/간병인은 돌보는 어린이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디지털 장치 및 휴대 전화의 책임 있는 사용이 요구됩니다 (예: 연령에 맞는 사진 및 영화 촬영, 미성년자의 사진 촬영은 아님). 성인 및 미성년자는 항상 적절한 옷차림을 착용해야 합니다.

5. 보육사나 사건의 지도자에게 보고해야 할 행동에 관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연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6. 교통편: 어린이 / 청소년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성인 운전자는 조직 면허와 함께 적절한 면허 및 보험을 소지해야 합니다. 사용되는 모든 차량에는 운전자와 각 승객을 위한 안전 벨트가 있어야 합니다. 85 파운드 미만의 미성년자는 모든 차량의 앞 좌석에 앉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및 취약한 성인을 운송하는 모든 운전자는 25 세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이 기본이 됩니다. 전세 버스가 임대되거나 외부 운송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된 회사는 운전자에 대한 형사 배경 조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각 차량은 이 섹션의 2 번에서 설명한 비율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건이나 활동에서도 미성년자는 운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골프 카트가 포함됩니다).
7. 양식: 각 미성년자의 법적 후견인은 각 활동 / 이벤트에 적절한 정보와 의료 서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 양식에는 법적 보호자의 모든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하며 의료 양식에는 미성년자 건강 보험 카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른 캠퍼스 행사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자가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행사에서 소셜 미디어 또는 조직위원회가 출판한 자료에 사용된 사진은 참가자의 법적 보호자와 미성년자의 서명된 동의서로 발표해야 합니다. 모든 양식은 행사장에 제한된 출입이 가능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8. 각 이벤트 / 활동은 각 이벤트 / 활동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규칙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이벤트 / 활동에 특정한 행동 강령 및 특정 이벤트 / 활동에 대해 금지되고 예상되는 행동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행동 강령과 금지되고 예상되는 행동 목록은 각 참가자 및 법적 후견인에게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벤트 / 활동의 시작 부분에서 철저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9. 어린이 / 청소년 및 성인은 목욕탕과 샤워실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행사에서 서로 다른 샤워 및 탈의 시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10. 어른들은 절대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과 숙실을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칙의 예외는 간헐적인 법적 간병인 / 자녀 상황 또는 부모 / 자녀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아동 / 청소년이 간병인 /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면 허가서를 아동 / 청소년의 부모 / 법적 보호자로부터 기록 및 보관해야 합니다.
11. 총회 후원 행사의 모든 자원 봉사자와 직원은 다음과 같은 금지된 행동을 강조하는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금지된 행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a. 자녀에 대한 성적 애정의 표시.
  - b. 모독 또는 색 농담 사용.
  - c. 아동과의 또는 개인적인 문제나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주변에서의 성적 경험에 대한 토론.
  - d. 아이들 (18 세 미만) 과 관련된 데이트나 "로맨틱"관계.
  - e. 아이들 앞에서 술이나 불법 마약의 영향을 받거나 사용함.

- f. 교회 행사를 위해 활용되는 교회 자산이나 재산에 인쇄물이나 온라인 포르노를 포함한 성적 지향 자료를 소지함.
- g. 청소년 / 어린이와의 비밀 유지.
- h. 아이들의 신체를 바라보거나 언급하기.
- i. 어린이와의 부적절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전자 통신.
- j. 개인적인 환경에서 아이들과 일대일로 일함.
- k. 어쨌든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한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청소년/아동 학대:
  - 신체적 학대: 때림, 체벌, 흔들음, 때리거나 불필요한 구속.
  - 언어 학대: 저하, 위협 또는 저주.
  - 성적 학대: 부적절하게 만지거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성적인 대화를 나눔.
  - 정신적 학대: 수치스럽고 굴욕하고 잔인하게 행동함.
  - 태만: 음식, 물, 은신처를 보류함.
  - 아동 또는 청소년을 괴롭힘, 왕따, 명예 훼손, 조롱, 굴욕 또는 성행위에 관여하도록 허용함.

## **소셜 미디어- 전자 통신 Social Media—Electronic Communications**

**일반 소셜 미디어 정책 General Social Media Policy**—총회, 고용인, 계약자 또는 자원봉사자는 스폰서 공의회, 총회 실체 또는 행사 지도부의 서면 허가없이 미국장로교회의 이름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미디어 사이트 (웹, 페이스북, 유튜브 등)를 만들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직자 또는 직원이 총회 또는 그 단체의 대표로서 활동할 때,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그룹 활동을 이끌거나 조정할 때, 각자는 단체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공식적인 총회 실체 장소/채널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웹 페이지, Facebook, 전자 메일 및 이와 유사한 수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소셜 미디어 통신 Social Media Communications**

총회 실체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공개 페이지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의사 소통을 모니터하고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어린이 및 청소년과 개인 (그리고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총회를 대표하여 페이스북 특권을 가진 사람은 연령 제한이 없는 아동 또는 청소년의 요청하지 않은 의사 소통 또는 "friending"을 허가 받지 않은 문자 메시지로 취급해야 합니다. 게시물을 통해 미성년 어린이의 "친구"초대를 수락한다는 것은 행동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답변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인과 학대 또는 부적절한 상호 작용을 드러내는 경우, 이 사람은 "학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방식으로 이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을 사용하여 아동이나 청소년과 의사 소통을 할 때, 허가된 목사는 각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부모/보호자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그 사람과 대화하고 있음을 알리고, 부모/보호자에게 이에 반대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소셜 네트워킹 행동 강령 Social Networking Code of Conduct**

소셜 미디어의 리소스를 사용하여 리드하는 각 사람은 다음의 소셜 네트워킹 행동 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 관찰자가 보기에 가혹하거나, 강압적이거나, 헐박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의견을 금지합니다.
- 성행위에 관한 성적 대화 또는 성행위에 관한 토론을 금하십시오.
- 직원과 자원봉사자, 어린이 또는 청소년 간의 사적인 메시지를 금지합니다.
- 부적절한 그림 게시 (예: 성적 암시, 착취 또는 관음) 또는 그림에 대한 부적절한 의견 게시를 금지합니다.
- 어린이, 청소년 및 부모에게 이 소셜 네트워킹 행동 강령을 제공하십시오.
- 부모가 자녀 및 청소년과 직원 및 자원봉사자 간의 상호 작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도록 권장하십시오.
-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해 적절하게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킵니다.
- 행동 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개인의 참여를 거부하십시오.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기관에서, 승인된 목사는 아동 또는 청소년 및 부모/보호자에게 이 소셜 네트워킹 행동 강령을 제출해야 합니다.

### **봉사를 위한 정책 및 신청 서명 SIGNING OF POLICY AND APPLICATION TO SERVE**

총회 기관 행사의 지도력에 참여하는 각 성인은 고용, 자원 봉사 또는 감독할 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장로교 (아동 / 청소년 / 취약한 성인 보호 정책 및 절차) 접수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총회 기관 행사의 지도력에 참여한 각 개인은 필요한 모든 포괄적인 배경 조사에 동의해야 하며 이 정책 위반으로 보고된 결과를 준수해야 합니다.